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종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934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8.

발 의 자:허종식 · 윤준병 · 유동수

어기구 · 김정호 · 박선원

노종면 • 이재관 • 김교흥

정일영 · 신영대 · 모경종

박성준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, 국가로 하여금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외국과 인접한 섬 지역은 육지와 달리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기인한 해양폐기물이 해류에 의하여 다량 유입됨에 따라 해양폐기물 수거·처리 업무 부담이 더욱 과중한 실정으로, 섬 지역에 대하여국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해류 등으로 인하여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 지역에 대하여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섬 지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 는 것임(안 제15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3(섬 지역 해양폐기물 처리 지원) ① 국가는 해류 등으로 인하여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 지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대하여 해양폐기물 보관 및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원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5조의3(섬 지역 해양폐기물
	처리 지원) ① 국가는 해류 등
	으로 인하여 외국의 해양폐기
	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
	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섬 지역에 대하여 해양폐기
	물 보관 및 처리를 위한 시설
	의 설치・운영 등에 필요한 지
	원을 하여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
	처리를 위한 지원의 범위 및
	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
	령으로 정한다.